

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자료**

희망의 새시대

<http://www.motie.go.kr>

2015년 9월 2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23(수) 오후 4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: 제품안전정보과 정승희 과장(043-870-5430), 김종윤 연구관(043-870-5434)
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 이정구 과장, 성주현 사무관(02-2100-4459)
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이병화 과장, 정윤숙 사무관(044-201-6783)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정종민 과장, 김광수 사무관(043-719-2158)
관세청 통관기획과 서재용 과장, 이익상 사무관(042-481-7841)

불법·위해 수입물품, 꼼짝마!

- 통관 단계부터 정부3.0 협업검사체계 본격 가동
23일 업무협약 체결... 검사 품목 계속 확대기로 -

- 불법·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·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.
- 행정자치부, 관세청,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이같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.
 - 이날 협약식에는 협업검사기관인 관세청, 산업부(국표원), 환경부, 식약처를 비롯해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, 화학물질관리협회,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참여했다.
- 종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·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.
 - 이에 따라, 불법·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.

-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.
- 협업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면, 각종 불법·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.
 - 수입품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되므로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.
-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 관세청·국가기술표준원·환경부 간 협업 검사 시범사업 결과, 불법·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의 위반 사례와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 - 관세청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,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체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.
- 행정자치부는 수입물품 협업검사가 부처 간에 협력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부 3.0 가치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서, 앞으로도 협업검사를 더욱 확산한다는 방침이다.
 - 국가기술표준원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(15.6.4)을 계기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협업검사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불법·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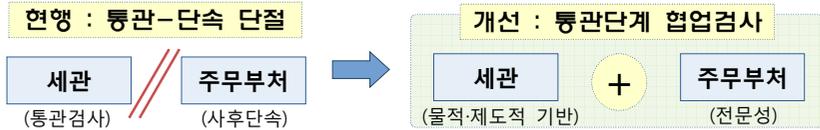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종윤 연구관(☎ 043-870-54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협업체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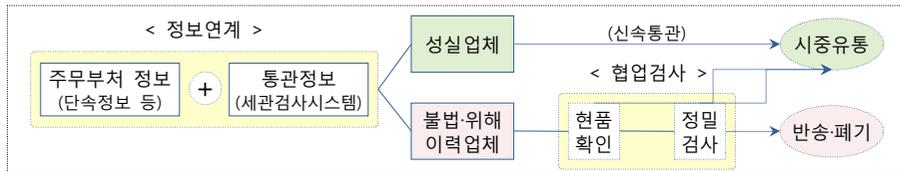
□ 협업 필요성

- 각종 수입물품 통관시 세관·주무부처간 협업검사체계 구축
 - 유통단계 사후단속에 치중된 위해물품을 통관단계에 사전 차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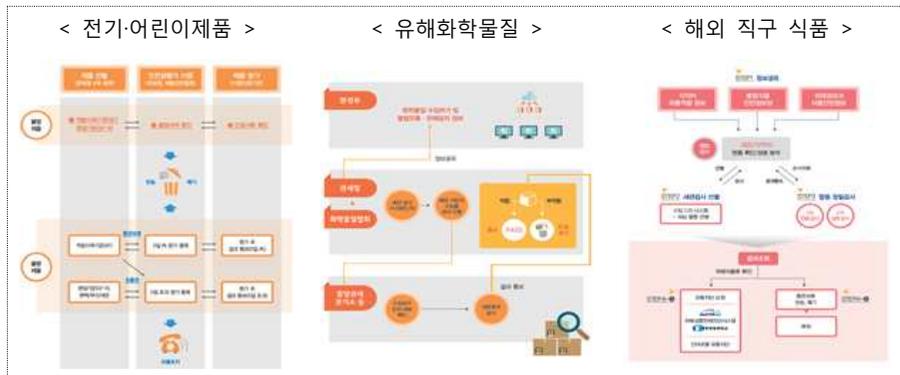


□ 협업검사 체계

- 협업검사 업무 흐름도



- 제품별 협업검사 체계



협업검사 주요 적발 사례

□ 국표원-관세청 간 협업 적발 사례



※ 관세청은 수입품의 인증서 구비 여부를 서면/전산으로 확인 후 통관조치함에 따라 인증서 위조, 인증번호 돌려쓰기, 인증 당시와 다른 저가 부품으로 교체 등 불법·불량제품 반입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나,
 - 협업을 통해 수입품을 국표원 인증정보와의 상세 대조, 시험기관의 재시험·분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불법·불량제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됨

□ 환경부-관세청 간 협업 적발 사례

	
<p>6가크로뮴 화합물</p>	<p>산화철로 품명 허위 신고한 납 화합물</p>
	
<p>수입금지물질인 알디캡</p>	<p>1급 발암물질인 석면</p>

※ 관세청은 환경부로부터 **화학물질 수입허가/신고 정보**를 제공받고 환경부에서 파견된 전문가와 함께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인직구 등 수입되는 화학물질 신고목록 내역을 분석

- 이 가운데 무허가·미신고 및 허위신고 의심 물질을 검사 대상으로 선별해 현품검사 후 세관분석소에 상세 성분을 분석 의뢰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게 됨